

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(제2차 본회의)

2014. 12. 18.(목) 10:00~

의안 심사보고서

의회 운영 위원회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11. 25.
- 나. 제출자 : 이성복 · 강철우 · 표주숙 · 권재경 · 김종두 ·
최광열 · 형남현 · 이홍희 · 변상원 · 박희순 ·
김향란 의원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4. 11. 25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12. 08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액(월정수당 1.7% 인상)에 맞춰 월정수당 금액을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월정수당 금액 변경 (안 제6조 제2항)
 - 1,566,660원 ⇒ 1,593,290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액(월정수당 1.7% 인상)에 맞춰 월정수당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-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